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육성발전과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자격) ① 본회 회원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학칙변경에 따른 환경도시공학부 건축학전공, 건축학부 포함)를 졸업하고 본회에 활동의지를 가진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가. 동문회비 납부(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나. 본회 정관 및 각종 결정사항 준수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자격제한)

- ① 본회의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본회의 참정권만 갖는다.
단, 전년도 회비를 납부하고 동문회비 자동이체 약정서를 작성한 즉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징계 또는 제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서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 2.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 3. 본회의 각종 활동이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
 - 4. 본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 ②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하는 경우 총회에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동문회장은 본인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징계 또는 제명이 결정되면 동문회장은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수) 임원의 수는 15인 이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며, 인원은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9명 이내
4. 감사 1~2명

제8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의 자격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 ② 회장 1명과 과 감사 1명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③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한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분야별 직무를 수행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4. 감사 : 감사는 본 회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 가. 년 1회 이상 본 회 모든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 나. 총회에서 감사결과 보고
 - 다. 회장에게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
 - 라. 감사에 필요한 임원 면담 요구
 - 마. 감사에 필요한 서류 열람 요청

제10조 (임원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회의 업무) 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모교 발전에 관한 사항
5. 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임원의 대우)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해촉) 회장은 임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 할 경우 해촉하고 새로운 임

원을 임명할 수 있다.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사업

제14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주 사업

- 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 나. 장학 사업
- 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 라. 재학생 멘토링
- 마. 모교 행사 지원(홈커밍데이, 동문의 밤, 학술제 등)
- 바. 동문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동문회 임원진 워크숍 개최, 동문회 회보 및 주소록 발간
- 사. 신입회원의 취업

2. 부 사업

- 가. 주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봉사, 교육, 상담, 문화 활동
- 나. 주 사업 시행을 위한 자원 조달 활동
- 다. 주 사업 대상 및 내용 발굴 활동
- 라. 주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한 기술, 교양, 인성교육 활동
- 마. 주 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연구 활동

3. 기타 임원회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업

② 위 사업 중 동문과 재학생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해당 단체의 고유성을 보장하여 동문회의 활동영역을 넓혀가며, 그와 동일한 사업은 동문회가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 단체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한다.

제5장 총회

제15조 (정족수) 총회는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회원도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회 최고의 심의 의결 기구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 제정 및 개정 의결
-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 의결
- 3. 회비의 부과징수 의결
- 4. 사업실적 및 예산 의결
- 5. 각종위원회 설치 의결
- 6. 그 밖의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회의의 소집) 회장은 다음과 같이 총회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와 제적회원 1/3이상에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명의로 1달 이내 소집한다.
2.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9조 (총회 의장) 총회 의장은 회장으로 하며, 회장은 의결사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 당일 의장을 임명하거나 추천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사록) ① 이사 중 1인은 총회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 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 내용과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임원들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의사록은 녹취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1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회비 : 10,000원/졸업시 납부
2. 연회비 : 50,000원
3. 임원회비 : 회장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이사 및 감사 20만원이며, 임원회비 납부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4. 동문회비는 월납 또는 일시불로 납부 할수 있다.
5. 동문회비는 동문회 운영비, 학교 발전기금 및 재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경비와 유지방법) ① 본 회의에 운영경비는 회원 입회비와 회비를 기본자산으로 하며 기타 찬조금과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재정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재정으로 한다.

② 가입비 및 회비는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① 본 회의 회계 연도는 7월-6월로 한다.

② 결산은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제7장 행정 및 회계 서류

제24조 (행정 및 회계 서류) 본회의 활동에 작성한 일반 행정 및 회계 서류는 차기 회장에게 모두 이관되어야 하며 차기회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수인계서류) 본회의 운영한 일반 행정 및 회계 서류는 차기 회장에게 모두 인수인계하여야한다.

제 10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26조 (정관 변경) 본 회의 회칙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7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구성원 3/4이상의 요구로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28조 (준용 법규) 본 회의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29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회의 회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작성일 : 2016년 6월 22일

작성자 : 이사 정동훈 (96)

인 증 : 회장 조원규 (1기 회장 : 87)